

제 252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0.11.6.)

# 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해 용]



# 목 차

1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
2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3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4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5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6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8
7	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7
8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9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9
10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7
11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8
1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86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91
14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	97
15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
16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8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0. 19.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10. 20.

## 2. 요구이유

- 에너지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를 협의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구성(가입)코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명칭(안 제1조)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 나. 기능(안 제4조)
  - 1)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 2)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 3)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 4)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실시

- 5) 국가의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간 연대 활동
- 6)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업
- 7)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 구성(안 제5조) :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라. 회의 및 의결(안 제9조)

- 1) 정기회의 : 연 1회
- 2) 임시회의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마. 사무국(안 제13조)

- 1) 사무국장과 간사를 둔
- 2) 사무국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총장이 있는 자치단체의 담당업무 과장으로 함

바. 재원(안 제16조)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

1) 연 회비

- 가) 인구 50만 명 초과 : 7,000,000원
- 나)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이하 : 5,000,000원
- 다) 인구 30만 명 미만 : 3,000,000원

##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5. 검토의견

- 가. 본 운영규약은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를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 나.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협의회로, 같은 법 제153조 및 제154조의 협의회 조직 및 규약 등이 체계상 문제점이나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 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과제 해결과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본 규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0. 20.

나. 발 의 자 : 권재경 의원 대표발의

(권재경·이홍희·김종두·표주숙·신재화·최정환·

권순모·김향란·심재수·이재운·박수자 의원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10. 27.

## 2. 제정이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과 통일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제13조)

마.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바. 위탁관리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10. 21. ~ 10. 2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의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분야에서 새롭고 지속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은 민간단체 차원의 다양한 교류 활성화로 한민족공동체 간의 동질성 확인의 기회로 말미암아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 관련법령 발췌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협조 요청)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남북한 간에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및 수송장비에 대한 통계자료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와 남북교류·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의2(업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의 추진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업무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0. 20.

나. 발 의 자 : 권재경 의원 대표발의

(권재경·이홍희·김종두·표주숙·신재화·최정환·

권순모·김향란·심재수·이재운·박수자 의원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10. 27.

## 2. 제정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거창군이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제도를 명시하고 관련 지원 체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함

## 3.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대행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다. 재정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 제29조
-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제3조, 제30조, 제30조의2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10. 21. ~ 10. 2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가.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의 업무지원 및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나.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 관련법령 발췌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사무기구) 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補)한다.

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범위
2.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대행기관 등) ①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으로 한다.

②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과 지역회의 및 같은 조에 따른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또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30조(협의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의장은 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출신 지역 및 협의회 참여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 회의 및 협의회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0. 19.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10. 20.

## 2. 개정이유

-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던 것을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포상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공적심사위원회 신설함

- 1) (현행)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 ⇒ (변경)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 2) 위원장 포함 7명 이내 구성
  - 가) 위원장 부군수, 위원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
  - 나) 위원의 직제순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
- 3)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긴급한 경우 등 서면심의 가능

### 나. 용어 순화함(안 제1조·제5조·제6조·제9조·제12조)

- 1) 행하는 → 하는, 현저한 → 뚜렷한, 요하는 → 필요한, 상신 → 제출, 등재 → 기록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2)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9. 8. ~ 2020. 9. 28.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뚜렷한 군민이나 외국인, 단체에 훈공에 따라 훈장을 내려주는 것으로

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적심사를 함에 있어 심사위원회를 현행 인사위원회에서 상위법령인 상훈법령에 맞춰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공정한 공적심사를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 의견18-0025 중**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공적심사)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기관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관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급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0. 19.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10. 20.

##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연가 보상비 지급 근거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기구인 공무원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

## 3. 주요내용

가. 공무원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안 제13조)

- 1) 공무원국외출장에 대한 타당성 심사
- 2) 중앙행정기관에서 계획한 공무원국외 출장은 제외

나. 위원회의 구성 등 신설(안 제14조)

- 1) 위원장 부군수를 포함하여 과장급 이상 공무원 6명으로 구성

- 2) 다른 기관·단체에서 경비 부담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위촉위원 1명 이상 포함 ⇒ 외부위원 신설로 현행 규칙의 형식으로 규정된 내용을 조례로 그 근거 규정을 변경함

다. 조례로 위임된 연가보상비 지급근거 신설(안 제19조제4항)

- 1)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 2) 내용 : 사용하지 않은 연가(20일 초과하지 않은 범위)일수에 대해서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 1) 「지방자치법」 제23조, 제116조의2
- 2) 「지방공무원법」 제59조
- 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 4)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1,059,690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7. 9. ~ 2020. 7. 2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가보상비 지급 근거 마련으로 법령적합성을 마련하고
- 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규칙」 형식의 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심사근거와 심사위원의 외부위원을 명문화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연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보상비 지급

나. 관련 조문: 제19조의4(연가계획 및 허가)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균비	1,059	1,060	1,060	1,060	1,060	5,299

### 3. 관련 의견

연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비 지급으로 직원 사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0년 기준)

1. 호봉제 :  $\text{본봉 } 29,447,054\text{천원} / 12\text{월} \times 86\% \times 1/30 \times 15\text{일} = 1,055,187\text{천원}$

2. 일반임기제 :  $\text{월액 } 1,870\text{천원} \times 84\% \times 86\% \times 1/30 \times 1/7 \times 70\text{시간} \times 10\text{명} = 4,503\text{천원}$

작성자: 행정과장 곽 승 욱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4(연가 사용의 권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직종구분에서 계약직을 폐지하고,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기준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특수경력직공무원 외에 유사 근무경력 등을 인정받아 임용된 경력직공무원도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고 조례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2일을 가산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7조제1항 단서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민간 경력"을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으로 한다.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삭제 <2020. 3. 10.>
5.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공무원
7.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times 1/30 \times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times 1/30 \times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 봉급액의\ 86퍼센트 \times 1/30 \times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times 1/30 \times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법제처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참고 규칙안 주요 검토의견

### □ 주요 개정 내용

#### ○ 심사위원회에 감사부서의 장 및 민간위원 참여

- 출장경비를 지원받는 국외공무출장을 심사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개정

####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참고 규칙안(=표준안) 중

**제〇〇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시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 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 자문 요청 사항

- 규칙의 형식으로 외부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 검토의견

#### ○ 규칙 개정 가능 여부

-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에 대한 적절성, 필요성 등을 심사하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인사권 행사를 돕기 위한 자문기관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 자문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현행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위원회에 관해서는 별도의 근거 또는 규칙으로 해당 사항을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법령 또는 조례에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위원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 또는 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없는 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규칙으로 해당 사항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법령 정비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지방공무원의 복무 처리를 위한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서 정할 필요성도 인정되나,
  -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국외공무출장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법령 또는 조례에서의 별도의 위임 없이 규칙으로 바로 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 규칙의 형식으로 심사위원회 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심사위원회에 관한 대략적인 근거를 두고,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조례에서 직접 규칙으로 위임 근거를 두게 하는 등의 방향으로 정비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에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의3(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등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또는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등과 그 연간운영계획
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등
5. 그 밖에 소속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

####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의견 20-0112

질의제목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1항 등 관련)

##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지?

## 2.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항에서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수당(제2호)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sup>1)</sup>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연가일수에 대해 규정(제1항)하면서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제4항)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7조의4에서는 연가 사용의 권장에 대해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에서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제1항)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그 밖에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 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각종 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18조의5에서는 연가보상비에 대해 규정하면서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고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그 외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하고 있고(제5항),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에서는 연가보상비 지급액,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규정 제22조에서는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의2(성과상여금),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제14조

1) 대법원 2009.9.10. 선고 2005다9227 판결 참조

(특수업무수당),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제18조(정액급식비), 제18조의5(연가보상비)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수당 등의 범위에 연가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전제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수당규정 및 그 위임을 받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예산도 업무의 집행의 기준으로 조례의 제·개정과 동일하게 예산의 확정 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sup>2)</sup>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연가보상비에 대하여 수당규정 제18조의 5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다른 수당이나 복리후생비와는 달리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연가보상비의 경우 예산 편성 여부와 상관없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없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규정 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대해서 수당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다면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수당규정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제도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므로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참조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0. 19.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10. 20.

## 2. 제정이유

- 거창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군정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3조)
  - 1) 적용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 2) 적용 배제·제한 : 휴직·파견·교육훈련·정직·직위해제 중인 소속공무원
  - 3)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적용 : 군의원·청원경찰·공무직근로자·공중보건 의사·공중방역수의사



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정함(안 제5조)

1) 구성 : 기본항목, 자율항목

2) 복지점수 부여 : 근무연수, 가족상황, 징계 여부 등 고려 점수화

라.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을 정함(안 제6조)

1) 편의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2)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시설의 이용권 확보

마. 후생복지사업을 정함(안 제7조)

1) 장기근속 시 국외시찰, 직장 동호회, 장제용품, 건강검진비, 단체보험비 등 지원

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정함(안 제8조~제10조)

1) 기능 :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등 심의

2) 구성 : 9명 이내, 직급별 대표, 노조 추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으로 구성. 필요시 민간전문가 위촉 가능

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공무원법」 제77조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5

3)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 1,556,000천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8. 21. ~ 2020. 9. 1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 나.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직사회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으로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가능토록 하는 등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 제5조·제7조

나. 비용발생 요인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1) 후생복지사업 지원대상 인원 1,000명 정도 예상
- 2) 공무원 수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합 계	1,215,610	1,556,000	1,604,055	1,653,251	1,693,624	7,722,540	
군비	복지포인트	878,110	1,072,500	1,104,675	1,137,815	1,171,950	5,365,050
	단체보험	240,000	280,000	290,000	300,000	300,000	1,410,000
	출산축하	7,500	7,500	7,500	7,500	7,500	37,500
	건강검진	90,000	90,000	92,700	95,481	98,345	466,526
	구내식당	0	6,000	6,180	6,365	6,556	25,101
	그밖의사업 (상세용품 등)	0	100,000	103,000	106,090	109,273	418,363

## 3. 관련 의견

맞춤형 복지제도와 후생복지사업으로 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과 사기 진작에 기여

##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0년 기준)

### 가. 맞춤형 복지제도

- 1) 복지점수, 단체보험, 건강검진, 출산축하
- 2) 1,330천원×914명=1,215,610천원

작성자: 행정과장 곽 승 욱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의 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비
2. 지방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旅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과 같다.

## 별표 5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 ① 경비성격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 ② 기준액 : 2021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 ③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19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20. 1. 1. 시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이 예규는 2020. 1. 1.부터 시행한다.

#### 2. 일반운영비(201목)

##### 2-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가. 맞춤형복지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할 수 있다.

※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조례·규칙)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 맞춤형복지제도의 시행경비 적용대상에 정무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도 포함한다.
-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복지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 등 타 비목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맞춤형복지예산의 집행잔액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재배정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의회사무기구"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3.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5. "직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자치경찰단·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학교·소방서와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말한다.
6. "사업소"란 법 제114조에 따른 사업소를 말한다.
7. "출장소"란 법 제115조에 따른 출장소를 말한다.
8. "보조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보좌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합의제행정기관"이란 법 제116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0. 20.

나. 발 의 자 : 최정환 의원 대표발의

(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이홍희·이재운·

권재경·표주숙·신재화·김종두·박수자 의원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10. 27.

## 2. 제정이유

-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지원 여성기업 용어 정의 및 지원 대상,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 제3조)

다. 여성기업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 1) 「지방자치법」 제9조
- 2)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과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10. 21. ~ 10. 2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가. 여성기업인 차별개선방안으로 여성기업 차별 금지와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 등 경제영역에서 양성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 6. 생략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 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거창군내(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 2. 군 소속 공무원
  - 3.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0. 19.

나. 제출자 :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 2020. 10. 20.

## 2. 개정이유

- 청소년활동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 될 경우 청소년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시설 사용료·감면기준 등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사용신청 중복 시 청소년·청소년동호인에 우선권 부여 신설함  
(안 제9조제2항)

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범위 법령불부합 소지규정 삭제  
(안 제10조제1항)

1)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제2항

2) 내용 :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 국민들도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이용범위를 명시

다. 청소년활동시설 명칭 및 사용료 추가부담 등을 정함(안 별표 2)

- 1) 청소년수련관 : 명칭 변경
- 2) 월성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시설 : 수련활동지도료 삭제
- 3)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 사용료 추가부담 신설

라.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함(안 별표 3)

- 1) 국가보훈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모두 명시함
- 2)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 권고사항 반영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4조, 제3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8. 24. ~ 2020. 9. 12.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안 별표 3)

## 5. 검토의견

가.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 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본래의 활동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유휴시간에는 일반인과 함께 사용하는 공유공간으로 이용범위를 명확화하고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의 추가부담 규정을 신설·세분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사용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 다. 사용료 감면대상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에 의거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라.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별표 2]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1. 거창군 청소년수련관(일반인 기준)

시설구분	기준	사용료	
		기본	추가부담
가. 대강당 (한마당터)	1회 3시간	50,000원	1) 1시간 초과 시 10,000원 2) 냉난방기 사용 시 20,000원 3)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요금의 30퍼센트
나. 소강당 (참배움터)	1회 2시간	20,000원	
다. 강의실 (한배움터1, 2)	1회 2시간	10,000원	
라. 야외공연장	1회 2시간	20,000원	

2.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일반인 기준)

시설구분	기준	사용료	
		기본	추가부담
다목적홀	1회 2시간	20,000원	- 2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당 5,000원

### 3.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 가. 청소년수련시설

구분	기준		사용료	
1) 숙박비 (1인1일)	청소년		6,000원	
	일반		9,000원	
2) 강당	공연 행사	오전	70,000원	
		오후	100,000원	
		야간	100,000원	
3) 세미나실	행사 교육	오전	40,000원	
		오후	50,000원	
		야간	50,000원	
4) 운동장	1일	경기	1회	50,000원
		경기외		100,000원
수련활동지도료		1회 1인 기준	4,000원	

#### 비고

##### 가) 부가세는 별도임

##### 나) 1박 기준

- (1) 그날 18:00 ~ 다음날 09:00
- (2) 식비, 시설이용료 및 수련활동비는 별도계산

##### 다) 이용시간 구분

- (1) 오전: 09:00~12:00
- (2) 오후: 13:00~17:00
- (3) 야간: 18:00~22:00

##### 라) 당초 허가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 (1) 30분 미만: 기준금액의 50퍼센트 추가 부담
- (2) 30분 이상~1시간 이내: 기준금액의 100퍼센트 추가 부담
- (3) 1시간 이상 초과: 매시간 기준금액의 100퍼센트 추가 부담

##### 마) 강당 냉난방시설: 1시간 초과 사용 시 10,000원씩 추가 부담

##### 바) 그 밖에 부대시설 및 행사기기 등의 사용료는 수련원의 내부규정에 따름

나.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구	분	사용료		비고
		개 인	단 체 (20명 이상)	
1) 입장료	어른	3,000원	2,500원	20세~64세
	청소년 및 어린이	2,000원	1,500원	7세~19세
2) 체험료	체험기구 당	2,000원	2,000원	

다.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구분	규 격	사용료			
		주중	주말	성수기	추가부담
캐빈하우스 (4동)	복층, 기준인원 5명, 최대인원 6명	80,000원	100,000원	140,000원	1) 1시간 초과마다 10,000원 2) 추가 1인당 10,000원
방갈로 (3동)	단층, 기준인원 3명, 최대인원 4명	60,000원	80,000원	120,000원	1) 1시간 초과마다 10,000원 2) 추가 1인당 10,000원
전기데크 (9개소)	5미터×5미터, 6인용	25,000원	30,000원	30,000원	1) 1시간 초과마다 3,000원 2) 추가 1인당 3,000원
일반데크 (5개소)	5미터×5미터, 6인용	15,000원	20,000원	20,000원	1) 1시간 초과마다 3,000원 2) 추가 1인당 3,000원

비고

가) 장비(텐트, 코펠 등)임대는 별도 계산

나) 부가세는 별도임

다) 아동의 경우 36개월 이상부터 1인 요금 부과

라) 성수기: 7. 20.~8. 20.

마) 주말: 성수기를 제외한 주말(금요일·토요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바) 주중: 성수기와 주말을 제외한 날

[별표 3]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감면율(제11조제1항 관련)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일성우주창의과학관에 한정)

감 면 대 상	감 면 율 (사용료에 대한 백분율)
1.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청소년관련 행사	100분의 10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24세 이하 자녀를 셋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가정	⇒성별영향평가 반영
6.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보호자 1명 <del>「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del>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행안부/국가보훈처)에 따라 국가보훈법에 따른 유공자 모두 열거 권고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청소년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개인의 경우 현장에서 증명서류 직접확인, 국가·군·단체의 경우는 감면신청서 첨부로 감면

## ● 관련법령 발췌

###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7.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숙박·야영하거나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8.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그 외의 다른 장소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으로서 실시하는 날에 끝나거나 숙박 없이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말한다.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 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 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금지행위)**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행위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 이용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1.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해당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이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①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수련시설의 이용)** 법 제21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수련시설을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 제31조 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2.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과학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5.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수목원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
8.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이용권장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소년이용권장시설의 지정신청·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①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란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 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청소년 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
2.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 외의 부대·편익시설 등의 사용
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과학관의 구분) 과학관은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과학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2. 공립과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3. 사립과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와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제7조 관련)**

1. 관람료

구분	금액		비고
	개인	단체(30명 이상)	
어른	4천원	3천원	20세 ~ 64세
청소년	2천원	1천5백원	13세 ~ 19세
어린이	2천원	1천5백원	7세 ~ 12세
노인	2천원	1천5백원	65세 이상
장애인	2천원	1천5백원	
국가유공자	2천원	1천5백원	

2. 과학기술자료 이용료

구분	수량	금액
사진 및 비디오 촬영	1회	2만원
사진 원판 이용	1장	2천원

비고: 국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국립과학관장이 정하고,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2020.6.)**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

**I. 정비필요성**

1.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보훈)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고,
  -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법 등 각종 보훈관계 법령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 국가보훈기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 (이용료 감면)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
  -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2. 정비필요성

- (감면 거부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및 감면대상을 일반적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감면대상에서 **누락**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 거부** 등 실무상 혼선 발생
  - ⇒ **호국보훈의 달(6월)**을 맞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
- (부처 간 협업) 지자체 운영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자치법규 규정 정비에 관한 **국가보훈처 협업 요청**

**II. 법령 상 요금감면 대상 및 범위**

**1 관련 법령(상세는 첨부자료 참조)**

- (보훈관계 법령)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기타 법령) 의사상자법(복지부 소관) 및 국군포로송환법(국방부 소관)도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을 규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위 8개 법령에서 감면대상 시설·요금 및 감면수준을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규정 방식도 유사

법령	대상자	대상 시설 및 감면 정도	
보훈계령	국가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 ~ 3급인 경우)	○ 이용료 면제 - 고궁 및 능원 - 국공립 공원 - 독립기념관 - 전쟁기념관**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국공립 수목원 - 국공립 자연휴양림
	독립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참전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이용료 50% 이상 감경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법 령		대상자	대상 시설 및 감면 정도
보훈 관계 법령	고엽제법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5·18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해등급 1 ~ 3급인 경우)	
	특수임무유공자법	○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 ~ 3급인 경우)	
기타 법령	의사상자법	○ 의사자 본인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 배우자 및 자녀 ○ 활동보조인(의사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국군포로송환법	○ 등록포로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부 또는 모 포함

\*\* 의사상자법의 경우 대관공연·대관전시 제외

⇒의무 공공시설이 아니더라도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 모두 열거할 것을 권고함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0. 19.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10. 20.

## 2. 개정이유

- 법률 위임 없는 작은도서관 운영기준 등을 삭제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작은도서관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작은도서관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의 목적이 법령 위임 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법률 위임 없는 작은도서관 운영기준 삭제(현행 제6조~제14조)
  - 1) 작은도서관 공간과 위치, 운영인력,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시간, 휴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기능
  - 2) 법제처 2017년 조례 규제개선 과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 다. 작은도서관 지원계획 수립, 지원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1) 지원계획 : 매년 수립, 지원 대상·내용·규모 등이 포함

- 2) 지원기준 :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에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된 작은도서관

라. 재정 지원을 정함(안 제4조)

- 1) 자료 구입비,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 2) 매년 운영 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 지원

마. 행정 지원을 신설(안 제5조)

- 1) 자원봉사자, 순회 사서 등 지원
- 2) 자원봉사자 실비지급

바. 환수 신설(안 제6조)

- 1) 지원받은 작은도서관이 6개월 내 설치·운영하지 않을 경우 환수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 1) 「지방자치법」 제22조
- 2)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50,450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0. 6. 1. ~ 2020. 6. 22.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없음



## 5. 검토의견

- 가. 군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위해 운영중인 작은도서관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인 위임없는 운영기준은 삭제하고
  
- 나. 작은도서관의 연간 지원 계획의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토대로 군민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나. 관련조문 : 제4조(작은도서관에 대한 재정 지원)

##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50	60	60	60	60	290

나. 비용추계 상세내역(2020년 기준 = 50백만원)

- 1) 순회사서 인건비 : 18백만원
- 2) 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 12백만원
- 3) 공립작은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 도서구입 : 18백만원
- 4) 작은도서관 운영 소모품 구입 : 2백만원

## 3. 관련 의견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하여 차별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정 세 환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 「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 3의2. "지역대표도서관"이란 해당 지역의 도서관을 지원·협력하여 지역 내 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제27조(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시·군·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에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시·군·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① 국가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교부결정의 취소) 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 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0. 19.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10. 20.

## 2. 개정이유

- 독서의 달 행사 참가자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거창군민의 독서 장려와 도서관 이용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전부 개정함

##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시행을 위한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을 정함(안 제3조)
- 다.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정함(안 제4조)
- 라. 독서문화 활동 지원을 정함(안 제5조)
  - 1)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재정 지원
  - 2) 군민의 도서관 이용 장려 및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 등 참가자, 독서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도서, 도서 상품권 지원
  - 3) 독서관련 행사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지급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 1)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 제12조
- 2)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3)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 5,000천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6. 23. ~ 2020. 7. 1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없음

## 5. 검토의견

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독서문화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원 등 다양한 시책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가. 제5조 독서문화 활동 지원

나. 독서의 달 행사 등 참가자, 독서실적 우수자 등에게 지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1) 2021년 예산 5,000천원 확보 예정

2) 독서의 달 등 행사 참가자에게 도서·도서상품권 또는 기념품 지원,  
독서실적 우수자 포상 등

## 4. 작 성 자

인구교육과장 정 세 환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거.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독서의 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독서 관련 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2.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제12조(시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시상하는 상은 독서문화상으로 한다.

② 독서문화상의 시상은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시설
-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생략)

제11조(장려금 지급 등) ① 국가는 문화예술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시상할 수 없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제12조(문화강좌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를 설치할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강좌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지역문화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정부 표창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의 원칙)** ① 표창은 대한민국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②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勳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
2. 시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

**제5조(시상의 요건)**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정부 각 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정부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 「거창군 포상조례」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발표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0. 19.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10. 20.

## 2. 요구이유

-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 「거창군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시설현황
  - 1) 시설명 :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 2) 위치 : 경남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  
(월성청소년수련원 내)

### 3) 시설개요

구분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개원일	2001. 5. 20.		2014. 3. 22.		2014. 6. 20.
규모 면적	지하1층, 지상3층 / 1,500.44㎡		지상2층 / 774.38㎡		캐빈하우스 4동, 방갈로 3동, 데크 14동 282.74㎡
근무인원	9명		4명		1명
주요 시설	지하	식당, 보일러실, 기계실, 전기실			캐빈하우스(복층) 4동 방갈로(단층) 3동, 야영데크 14동, 취사장 1동 화장실 1동
	1층	사무실, 강의실(2곳), 숙소(10실), 준비실, 원장실	1층	우주체험관, 4D영상관	
	2층	강당, 강의실, 숙소(8실)	2층	우주창의관, 교육체험실	
	3층	지도자숙소(5실)	옥상	천체관측관	

#### 나. 현 위탁비 지원 현황

시 설 명	내 역
월성청소년수련원	배치지도사 1명 인건비 22,968천원 지원 (국비 10,938, 군비 12,030)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비 230,000천원 지원(군비)
거창국민여가캠핑장	대부료 8,980천원 징수

#### 다. 청소년활동시설 운영 현황

시설명	위탁 현황		기간	비고
월성청소년 수련원	최초위탁	2000. 12. 28. ~ 2003. 12. 27.	3년	
	1차 계약갱신	2003. 12. 28. ~ 2006. 12. 31.	3년 4일	
	2차 계약갱신	2007. 1. 1. ~ 2009. 12. 31.	3년	
	3차 계약갱신	2009. 1. 1. ~ 2012. 12. 31.	3년	
	4차 계약갱신	2013. 1. 1. ~ 2015. 12. 31.	3년	
	5차 계약갱신	2016. 1. 1. ~ 2019. 12. 31.	4년	
	6차 계약갱신	2020. 1. 1. ~ 2020. 12. 31.	1년	

시설명	위탁 현황		기간	비고
월성우주 창의과학관	최초위탁	2014. 3. 3. ~ 2016. 12. 31.	2년 9개월	
	1차 계약갱신	2017. 1. 1. ~ 2020. 12. 31.	4년	
거창국민 여가캠핑장	최초위탁	2014. 6. 12. ~ 2016. 12. 31.	2년 6개월	
	1차 계약갱신	2017. 1. 1. ~ 2020. 12. 31.	4년	

라. 위탁사무 및 조건

1) 거창월성청소년수련원

- 가) 월성청소년수련원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 나) 운영비는 위·수탁자 협의로 예산범위 내 지원
- 다) 위탁대상 시설의 개·보수비 중 거창군에서 심사 결정한 사항 지원

2)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 가) 위탁대상 시설 및 물품 무상사용
- 나) 위탁금을 지급하고 관람료 등 수익금은 거창군 수입 처리

3)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 가)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자 수입
- 나) 캠핑장 사용료는 연 2회(연11,000천원) 거창군에 납부
- ※ 입찰가격 및 협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위탁기간 : 2021. 1. 1. ~ 2025. 12. 31.일까지(5년간)

※ 위탁기간 만료 시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바. 수탁자격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시설명	구 분	지원자격
수련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과학관	청소년이용시설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 실적 필요
캠핑장	청소년이용시설	운영실적 필요

사. 선정방법 : 공개모집 공고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공개모집 시 지원단체 없으면 위원회 심의 후 현 수탁기관 재연장

## 4. 관계법령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나.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
- 다.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 라.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5. 향후계획

- 가. 공개모집의 경우
  - 1) 2020. 11월 : 군의회 동의
  - 2) 2020. 11월 : 공개모집 공고
  - 3) 2020. 11월 : 수탁자 선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위원선정 : 관련공무원, 군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 학식과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2020. 12월 : 수탁자 선정 발표
  - 5) 2020. 12월 :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

나. 계약갱신의 경우(공개모집 후 지원단체 없을 시)

1) 2020. 11월 : 군의회 동의

2) 2020. 11월중 : 재위탁 신청서 접수

(신청서, 청소년단체신고필증,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대표자  
사용인감계, 종사자배치계획, 장비보유현황 등)

3) 2020. 11월 : 민간위탁심의회 심의

⇒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

4) 2020. 12월 :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

## 6. 검토의견

가. 청소년활동시설(거창월성청소년수련원,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 캠핑장)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실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임.

나. 청소년활동시설은 초·중·고 학교와 안전한 네트워크 형성과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으로 이용인원의 증가와 수입액 증가 등 지속적 성과를 거양해 오고 있음

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 학교의 등교중단 및 단체활동 자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청소년활동 시설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동안의 업무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시설활용을 위해 위탁운영이 타당함

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탁기관 모집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법령 및 기타 제반사항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 **관련법령 발췌**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이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0. 19.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10. 20.

### 2. 요구이유

-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 교육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근거법령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665,000천원 / 2021 예산편성 요구사항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균 비	기 타
2021년	665,000	665,000	665,000			665,000	

- 사업내용 :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등

## 나. 부서의견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장학사업의 출연금 지원으로,
- 거창군의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거창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4. 관계법령

가. 「교육기본법」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5. 검토의견

가. (재) 거창군장학회는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나. 2021년 장학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거창의 대표 이미지 ‘교육도시’ 확고히 하며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교육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 출연기관 현황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근거	법률 :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례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55-940-8812			
				홈페이지 : www.gcdream.kr			
주요연혁	설립연도 : 2005. 12. 16. 장학기금 100억원 달성 : 2009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20. 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7명		0명	17명			
임원 (‘20. 9.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거창군수	당연직(재직기간)			
	상임이사	신○○	前) 민주평통회장	2018.12.03. ~ 2020.12.02.			
	비상임이사	정○○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당연직(재직기간)			
		이○○	前) 거창군여성단체협의회장	2019.12.26. ~ 2021.12.25.			
		이○○	前) 거창교육지원청 과장	2019.12.26. ~ 2021.12.25.			
		구○○	(사)한농연 거창군연합회장	2019.12.26. ~ 2021.12.25.			
		오○○	前) 거창중학교 교장	2018.12.03. ~ 2020.12.02.			
		최○○	새마을지회장	2018.12.03. ~ 2020.12.02.			
		백○○	거창한뉴스 대표	2018.12.03. ~ 2020.12.02.			
		정○○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장	2019.12.26. ~ 2021.12.25.			
		백○○	거창농산 대표	2019.12.26. ~ 2021.12.25.			
		송○○	거창군이장자율협의회회장	2019.12.26. ~ 2021.12.25.			
		김○○	거창푸드종합센터 이사장	2019.12.26. ~ 2021.12.25.			
	이○○	(사)거창시장번영회장	2019.12.26. ~ 2021.12.25.				
	감사	백○○	前) 교장	2019.12.26. ~ 2021.12.25.			
유○○		푸른산내들 이사	2019.12.26. ~ 2021.12.25.				
	정○○	대경회계사무소 대표	2019.12.26. ~ 2021.12.25.				
주요기능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필요한 지원						
자본금 <sup>1)</sup> (단위:백만원)	10,00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2,086 (직전연도말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10,649 (자산 총액)
	예산액 <sup>2)</sup>	11,187	11,334	11,464		부채	0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sup>3)</sup>	665	665	665		자본 <sup>1)</sup>	10,649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9. 12. 31.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187			1,075		112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 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 ● 관련법령 발췌

###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의 설립과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제4조 삭제<2019.4.3.>

제5조 삭제<2019.4.3.>

제6조 삭제<2019.4.3.>

제7조(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3. 교육여건 개선사업
4. 국내·외 청소년과의 교류사업
5.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재정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타조례개정 2014.12.31.)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장학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장학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인력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인력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장학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2019.4.3.>

부칙 <전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부칙(조례 제2496호 201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0. 19.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10. 20.

2. 요구이유

-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조사·교육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함.

3.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1)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2) 대 상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
- 3) 사 업 비 : 3,486천원 / 2021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천원)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지 특	도 비	군 비	기 타
2021년	4,038	3,486	3,486			3,486	

4) 산출기초 : '19년 결산 보통세 26,822,217천원  $\times$  1.3/10,000 = 3,486천원

5) 사업내용

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나)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나. 부서의견

1)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 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2)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 시스템 운영,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세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3)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재무회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기관감사 및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고 있어 투명성이 확보됨

## 4. 관련법령

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5. 검토의견

가.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출연하도록 법적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음.



나. 지방세 연구와 지방세법 해석,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그 역할이 필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에 관한 특례)** 2021회계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은 제9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만분의 1.3으로 한다.

**【 출연기관 현황 】**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전화번호 : 02-2071-2789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 2. 28 설립등기			기관형태	출연		
	- 2011. 4. 20 개 원						
인원현황 (2020년 9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입시직·파견		
	73명		63명 (원장1, 부원장1, 연구위원20, 연구원15, 관리직1, 전문직2, 사무직22, 시설직1)				
임원 (2020년 8월 현원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허○○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17.12.22. ~ 2020.12.21.		
	부이사장	황○○	충청남도 논산시장		2020. 2.28. ~ 2021. 2.27.		
	이사 (10)	배○○ 이○○ 김○○ 김○○ 차○○ 정○○ 이○○ 김○○ 송○○ 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 연 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0. 2.28. ~ 2021. 2.27.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0. 2.28. ~ 2021. 2.27.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2020. 2.28. ~ 2021. 2.27.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		2020. 2.28. ~ 2021. 2.27.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구청장		2020. 2.28. ~ 2021. 2.27.	
				충청북도 청주시 부시장		2020. 2.28. ~ 2021. 2.27.	
				전라북도 무주군 부군수		2020. 2.28. ~ 2021. 2.27.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0. 2.28. ~ 2021. 2.27.	
	감사 (2)	김○○ 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2020. 2. 28. ~ 2021. 2. 27.	
주요기능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80,148 (설립일~2020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17,715 (자산 총액)
	예산액	13,719	13,164	12,378		부채	849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2,102	10,843	11,391		자본	16,866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9.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1,951				8,817		3,134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0. 19.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10. 20.

### 2. 요구이유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차질 없는 문화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1) 근거법령 :
  - 가) 「지방출자·출연법」 제20조,
  - 나)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 2) 대 상 : 거창문화재단(이사장 구인모)
- 3) 사 업 비 : 843,000천원 / 2021 예산편성 요구사항

사업기간	2020년 예산액	2021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균 비	기타
2021년	691,000	843,000	843,000	-	-	843,000	

#### 4) 사업내용

가) 문화재단 사무국 인건비(직원 4명, 기간제 4명) 지원

나) 문화재단 사무국 경상경비(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지원

#### 나. 부서 의견

- 1)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2017년 설립 이후 운영 5년차에 접어드는 거창문화재단은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및 한마당대축제 기획·운영 업무를 비롯하여
- 2)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들의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거창문화센터 관리 등을 위한 예산을 출연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4. 참고사항

가. 출연금 개요 :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붙임 1]

나. 최근 3년간 운영비 지원현황 [붙임 2]

## 5. 관련법령

가.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20조

나.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 6. 검토의견

가. 거창문화재단은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

나. 2020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문화예술분야는 공연 취소 등 공연생태계의 변화하도록 바뀌고 이에 무관중 온라인 공연, 언택트 스트리밍 공연 등 변화된 공연환경에서 생존 가능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다. 2021년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들의 보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되도록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 □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출연기관 현황 】**

**거창문화재단**

설립근거	법률 : 「민법 제32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조례 :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화번호 : 055-940-8460 홈페이지 : www.gccf.or.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2017. 1. 12.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20. 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5명		7명		8명		
임원 (‘19. 9.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現 거창군수		재직기간(2018.7.2.~현재)		
	비상임이사		정○○	現 거창군 문화관광과장		재직기간(2020.7.6.~현재)	
			이○○	前 아림예술제위원회 위원장		2년(2019.1.18.~2021.1.17.)	
			이○○	거창문화원장		2년(2019.1.18.~2021.1.17.)	
			민○○	거창예총 회장		2년(2019.1.18.~2021.1.17.)	
			박○○	거창전수관장		2년(2019.1.18.~2021.1.17.)	
			신○○	거창문화원 감사		2년(2019.1.18.~2021.1.17.)	
			곽○○	(사)아림예술제위원회 서예분과위원장		2년(2019.1.18.~2021.1.17.)	
			백○○	거창군민의 날 추진위원장		2년(2019.1.18.~2021.1.17.)	
			김○○	前 거창문화원 이사		2년(2019.1.18.~2021.1.17.)	
			이○○	경남일보 차장		2년(2019.1.18.~2021.1.17.)	
			신○○	케이피커뮤니케이션(주) 문화사업국장		2년(2019.1.18.~2021.1.17.)	
		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연합회 거창지회 부회장		2년(2019.1.18.~2021.1.17.)		
		정○○	거창미협 前 윤리이사		2년(2019.1.18.~2021.1.17.)		
감사		이○○	現 거창군 재무과장		재직기간(2020.7.6.~현재)		
		이○○	세무사		2년(2019.1.18.~2021.1.17.)		
주요기능	문화공연 및 전시 기획·운영, 문화아카데미 운영, 거창한마당대축제 기획·운영 등						
자본금 <sup>1)</sup> (단위:백만원)		5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843 (2021년 출연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8	2019	2020	재무현황 (백만원) ‘19.12.31기준	자산	956 (자산 총액)
	예산액 <sup>2)</sup>	2,265	2,861	3,507		부채	769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sup>3)</sup>	1,938	2,557	3,292		자본 <sup>1)</sup>	188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9. 12. 31.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241				2,291		-49

# 참 고 사 항

## 1 문화재단 운영지원 사업 (인건비,경상경비-출연금)

- 사업목적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한 차질 없는 문화재단 운영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업장소 : 거창문화재단 일원(거창문화센터)
- 사업비 및 내용

세부사업	사 업 내 용					비고
계 (843,000)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 고	
	합계	691,000	843,000	152,000		
인건비 (339,196)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 고	
	총 계	280,210	339,196	58,986		
	직 원	220,689	218,314	-2,375	자녀학비보조수당 항목 없어짐	
	기간제	59,521	120,882	61,361	기간제 2명 증가(당초 2명 ⇒ 현재 4명)	
*직 원 : 4명(문화사업1단장 1, 단원 3)						
*기간제 : 4명(환경관리 2, 사무보조 1, 공연장보조 1)						
경상경비 (503,804)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비고	
	총 계	410,790	503,804	93,014		
	복리후생비	27,400	27,400	-		
	일반운영비	137,490	232,210	94,720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운영비 소요금액 반영 공연장 무대 청소, 창고임대, 이사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39,651	139,651	-		
	시설유지 관리비	35,000	40,000	5,000	문화센터 화단 및 조경관리비 반영	
	회의운영비	13,930	13,543	-387		
	여비교통비	37,319	36,000	-1,319	과다편성분 삭감	
	업무추진비	16,000	12,000	-4,000	업무추진비 기준에 따라 편성	
	관서업무비	4,000	3,000	-1,000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운영비 증가요인 발생						

※ 최근 3년간 운영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지원금액	544,130	906,300	691,000	843,000	재단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
전년대비증감	-	증) 362,170	감) 215,300	증) 152,000	
예산과목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307-03)		출연금(306-01)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0. 20.

나. 발 의 자 : 권재경 의원 대표발의

(권재경·이홍희·김종두·표주숙·신재화·최정환·

권순모·김향란·심재수·이재운·박수자 의원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10. 27.

## 2. 개정이유

-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3. 주요내용

가.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안 제6조)

나. 수리비 지원범위 구체화함(안 제6조)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행복나눔과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10. 13. ~ 10. 19.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가. 장애인보장구는 의료적인 처치로는 극복하지 못하는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교육, 직업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잠재된 기능성을 발굴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타인과 보다 의미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나. 장애인의 사회경제활동의 필수품인 보장구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해 보다 많은 장애인이 수혜를 받고, 수리비 지원범위를 보장구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관련 조문:

제6조(지원대상) ② 지원금액은 연간 300,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하며, 전지교체 지원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자에 한정하여 다른 법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 받은 후 추가 본인부담금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군비	19,500	19,500	19,500	19,500	19,500	97,500
세출	군비		19,500	19,500	19,500	19,500	19,500	97,500
	소계		19,500	19,500	19,500	19,500	19,500	97,500

### 3. 관련 의견 :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감소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이용) 현황(2019년 기준)

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10명

나. 일반 장애인 : 55명

※ 관내 의료기 상사(동양의료기, 이원의료기)를 통한 보장구 수리 이용인원 조사

2. 비용추계 : 65명 × 300천원 = 19,500천원

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10명 × 300천원 = 3,000천원

나. 일반 장애인 : 55명 × 300천원 = 16,500천원

작성자: 거창군 행복나눔과 강 준 석

## ● 관련법령 발췌

###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0. 10. 19.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0. 10. 20.

## 2. 요구이유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탁기관에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시설·단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업무의 효율적 추진

## 3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 대상사업 : 장애인일자리사업
- 나. 위탁 참여인원 : 9명(예정)
- 다. 위탁사무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불법주차 계도 업무 수행
  - 2) 일자리 참여자 모집·선발·교육훈련·사후관리 등 업무수행
  - 3) 참여자 근태관리 및 인건비 지급



라.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마. 수탁자격 : 장애인일자리(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비영리 민간 기관(장애인 단체 등)

바.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필요성

- 1) 직접 운영 시 일자리 참여자 9명(예정)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협소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업무는 민원 발생이 많은 사업의 특성으로 위·수탁 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함
- 2)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시설·단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함

나. 소요예산 : 54,750천원(도비 12,096, 군비 42,654)

## 5. 관계법령

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63조

나.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

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라.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지침 p.83

## 6. 향후계획

- 가. 군의회 동의안 제출 : 2020. 10월
- 나. 위탁기관 모집 공고 : 2020. 11월
  - ※ 공고기간 : 2020. 11. 9. ~ 11. 23.
- 다.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0. 12월 중
- 라. 위·수탁 협약체결 : 12월중

## 7. 검토의견

- 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경제적 수입을 통해 통합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비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임
-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된 공간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매칭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다. 위탁기관은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기관으로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탁기관 모집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법령 및 기타 제반사항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 ● 관련법령 발췌

###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

사업수행기관 ① 복지일자리(참여형) : 시·군·구청장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에서 수행가능

-단, 민간 위탁시에는 지역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및 비영리민간 기관(장애인단체 등)에 사업 위탁 가능